
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05,917,572	27,177,527
일반회계	806,009,031	24,180,271
특별회계	99,908,541	2,997,256
기타특별회계	99,908,541	2,997,256
동남권 방사선 의·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	46,130,312	1,383,909
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발리지	4,967,995	149,040
의료급여기금	597,971	17,939
지하수관리	1,211,527	36,346
폐기물처리시설	8,275,202	248,256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	1,014,121	30,424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1,194,101	335,823
원자력발전지역개발	23,159,061	694,772
주차장	3,358,251	100,74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·세출예산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,870,30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(국·시비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)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